



베트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베트남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섯 단계의 수출입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며, 관리기관인 베트남 보건부 식품관리청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p72 참조)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

: 상품명, 제조사 또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상품 원산지

주요항만

: Da Nang Port, Saigon Port, Port of Ho Chi Minh City

베트남 보건부 식품관리청 (MOH)

(www.moh.gov.vn)
: 식품위생과 안전을 관리감독함

세관

(www.customs.gov.vn)
: 세관규정, 세율조회, 감독, 국제협력, 항만정보 등 안내

1 수출계약

· 거래선(바이어) 발굴 · 계약진행

2 서류준비

· 선하증권 · 상업송장
· 세관수입 신고서 · 검사증명서
· 포장명세서 · 기술표준 및 위생증명서
· 터미널 처리비용

3 선적/출항

· 수출통관 · 포워딩 업체 지정 · 운송

4 수입신고/검사

유지류, 음료, 제과, 원료,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되어 검사가 진행됨

5 세금납부

· 제품가격 + 수입관세 + 부가세

6 통관/국내유통

· 세관 서류 제출
· 세금납부
· 현지 바이어 화물인수



품목별 통관 절차



TRADE PROCESS VIETNAM



베트남 식품 수출입 프로세스

OVERVIEW

베트남 수입 절차 6단계		
1	수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선 발굴 계약진행
2	서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 서류 준비 식품위생안전 품질검사위한 서류 준비 통관 서류 준비
3	선적 /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사 통해 수출통관 진행 포워딩 업체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
4	수입신고 /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청에 식품 수입을 신고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 검토 검역 검사 실시 식품위생안전 품질 검사 진행 검사 인증서 발급
5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 납부 = 제품가격+ 수입관세 + 부가세 * 수입 관세는 한·ASEAN FTA 관세율을 적용함 특히 주류, 농산물, 인삼의 관세율이 높음
6	통관 / 국내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안전 증명서(Safety Food License)를 제품 별로 받으면 통관이 가능 수입쿼터제도 시행으로 해당품목 확인

베트남 수입 부대조건

	서류 준비	항만, 터미널 처리	통관수속	내륙운송	필요서류
소요 기간	12 일	4 일	4 일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하증권(B/L) 화물보관해제 주문서(CRO) 상업송장(Invoice) 세관 수입 신고서(CID) 검사증명서(Inspection Report)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필요 인증서 (기술표준, 위생 증명서)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터미널 처리 비용(THC)
소요 비용	130 달러	175 달러	95 달러	200 달러	

베트남의 식품 통관절차는 계약에서부터 현지 유통까지 아래의 6단계로 이루어짐



01

✓ 거래선(바이어) 발굴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 디렉토리(Trade Directory)¹⁾, 각 국의 무역 관련기관 또는 전시회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한다.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한다.

수출계약

✓ 계약 진행

충분히 수출 가격을 검토한 후 구매자에게 희망조건을 명기한 제안서(비즈니스 오퍼)를 제출한다.

구매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몇 차례 카운터오퍼(Counter offer)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 된다.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의 조건을 명시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

* 카운터 오퍼란?

판매자가 제안한 오퍼 내용에 대해 구매자가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는 오퍼를 말한다.

02

서류준비

✓ 수입신고 서류 준비

수입신고는 서면 제출과 전자통관이 가능하며,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안전 위생 품질 기준 신고서 1부
- 기업의 기초 기준서 2부 : 식품수출기업의 직인, 인정기준, 생리화학기준, 미생물기준, 중금속기준, 식품첨가물기준, 사용기한, 사용방법, 보관방법, 제조공정
- 해당식품의 주요성분 및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품질검사결과서 또는 베트남에서 지정한 기술기관의 검사결과인증서
- 식품수출기업 직인이 포함된 식품표시내용서 또는 상품표시제안서
- 원산지 국가의 관례당국으로부터 취득한 자유판매인증 및 보건인증
- 특수식품(의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영양식품, 중환자 영양 공급을 위한 식품, 필수 영양소 보조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신고서류에는 연구 및 임상실험 결과, 기타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보건부가 지정한 당국의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분석 결과가 첨부되어야 함

✓ 식품위생안전 품질검사 서류준비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8가지 통관 기본서류 준비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보관해제 주문서(Cargo release order),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세관수입 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검사증명서(Inspection report),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기술표준 및 위생 증명서(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터미널 처리 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1)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 EC21(www.ec21.com) 등

03

선적/운송

✓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기업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한다. 기업이 수출통관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하면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unipass.or.kr)으로 처리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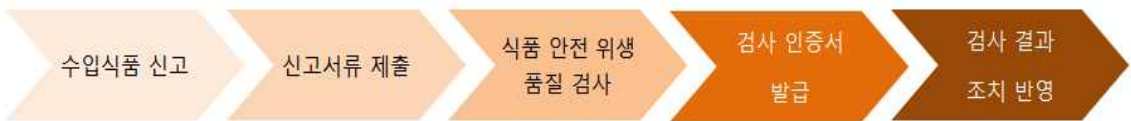
✓ 운송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진다.

04

수입신고 / 검역

✓ 베트남의 식품 수입절차 5단계와 절차별 상세사항



수입 식품이 베트남의 국경 관문에 도착하면, 30일 이내로 보건부의 식품관리청에 수입신고를 한다. 제출된 수입신고서와 기타서류 검토에 15일이 소요된다. 품질 기준 신고대로 작성된 서류로 확인되면 검역이 실시된다. 검역을 통과한 식품은 수입신고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식품 안전위생 품질검사가 시행된다. 식품 안전위생 품질검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검사인증서가 발급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된다.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식품은 재처리, 폐기, 반송된다.

✓ 가공식품 검역절차 상세사항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하단의 품목들은 베트남에 도착하기 5일 전에 검역 검사를 반드시 신청한다. 물품이 도착하면 보건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를 받은 검사기관은 검사일정을 통지한다. 검사기관은 상품 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과 샘플을 분석한 뒤, 베트남의 식품관련 국가기준(TCVN)과 비교하여 검역의 통과여부를 판단한다. 검역을 통과한 수입식품은 식품안전검사를 신청한다. 특히 음료, 유제품, 유지, 전분, 제과류는 상공부의 관할로 분류되어 식품안전 검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 유지류 : 동물성, 식물성 유지
- 음료 : 우유, 각종 유제품, 우유 조제품 / 커피, 차 / 알콜 음료
- 제과 : 설탕과자, 베이커리 제품, 카카오 성분 함유된 각종 조제품
- 원료 : 설탕, 카카오, 전분, 후추, 조미료, 식초, 식품 첨가물
- 가공식품 : 야채, 과일로 만든 조제품, 육(肉) 가공식품, 어육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 * 상기 제품들의 내용물뿐 아니라 포장재도 검역이 실시됨

✓ 품목별 수입절차 상세사항 - 동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의 경우,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출국의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통관 시 베트남 당국이 검사한 물품만이 유통 가능하다.

✓ 품목별 검역절차 상세사항 - 식물성 식품

식물성 제품의 경우, 베트남이 수출국으로 인정한 국가만이 수출이 가능하며 한국은 2011년 11월 1월부터 수출국으로 인정받아 식물성 제품의 수출이 가능하다.

✓ 품목별 검역절차 상세사항 -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가 필요하다.

-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 기능성식품, 미량 영양소, 보조식품, 식품첨가물, 음용수, 광천수

05

✓ 세금 납부

수입 제품의 납부 금액은 제품가격과 수입관세,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다. 품목에 따라 특별 소비세율이 추가되며, 주류가 해당된다.

세금납부

✓ 수입 관세 납부

베트남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17.4%이지만 베트남과 한국은 한·ASEAN FTA 관세율이 적용되어 평균 4.7%를 적용받고 있다. 한·ASEAN FTA를 적용받는 국가들 중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63%가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45%가 0~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비교적으로 농산물과 주류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주류 관세율은 현행 관세율 보다 인상될 예정이며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분	현행 관세율	인상 예정 세율
20도 이상 주류	50%	65%
20도 미만 주류	25%	35%
맥주	50%	65%
탄산음료	0%	10%

- 농산물의 현행 관세율 : 21%
- 인상 관세율 : 한국 인삼제품은 보통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품목에 따라 10~20%의 관세가 적용됨. 추가로 30%의 수입관세와 10%의 부가세가 적용됨

06

✓ 통관 상세사항

베트남 식품 관리청에서 발행하는 식품 안전 증명서(SAFETY FOOD LICENSE)를 제품 별로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품목 당 30달러(USD)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모든 통관절차를 마친 화물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통관 / 국내유통

✓ 베트남의 수입쿼터제도

베트남은 수입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베트남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수입쿼터 관리 대상 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무역부가 통제하고 있다. 현재 수입쿼터가 적용되고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다.

- 계란, 오리알, 기타알 : 3,800 Dozon 제한
- 설탕 250,000 Ton 제한
- 소금 102,000 Ton제한

07

라벨링

✓ 라벨링

베트남에 수입·유통되는 상품은 라벨링 법령에 따라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지의 내용은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 라벨을 부착하고 식품위생안전 품질검사를 받아야한다. 포장지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식품은 따로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의 식품 라벨지는 품목 별로 필수 기재사항이 다르다.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

- 상품명,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단체 이름 및 주소,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상품 원산지

<품목 별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

- 곡물 :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 식품 : 중량, 제조 일자, 유통기한, 구성성분 및 중량성분, 위생과 안전에 대한 경고, 사용법, 보관 안내
- 음료(술 제외) : 중량, 제조 일자, 유통기한, 구성성분 및 중량성분, 위생과 안전에 대한 경고, 사용법, 보관 안내
- 술 : 중량, 에탄올 함량, 보관 안내(와인만 해당)
- 식품의 첨가물 : 중량, 제조 일자, 유통기한, 중량 성분, 사용법, 보관 안내



상품명

구성성분 및 중량성분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단체이름 및 주소, 원산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은 앞면에 별도 표기함

< 라벨링 표기법 샘플 >

08

식품 규제

✓ 포장용기 관련하여 별도의 규제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용기에서 식품으로 녹아드는 중금속의 최대 허용량 수치를 용기의 크기와 형태, 소재 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포장재는 보건부 장관이 규정한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킨 소재만을 사용해야하며, 유통 전 당국의 규제에 따르고 있음을 통보해야한다. 식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플라스틱 용기는 QCVN 12-1:2011/BYT, 고무 용기는 QCVN 12-1:2011/BYT, 금속제 용기는 QCVN 12-3:2011/BYT 규격을 따르고 있다

✓ 식품첨가물도 별도의 규제사항이 존재하며, 보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첨가물 리스트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통 전에 본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당국에 통보해야한다.

09

수입 식품
검사기관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Vietnam, M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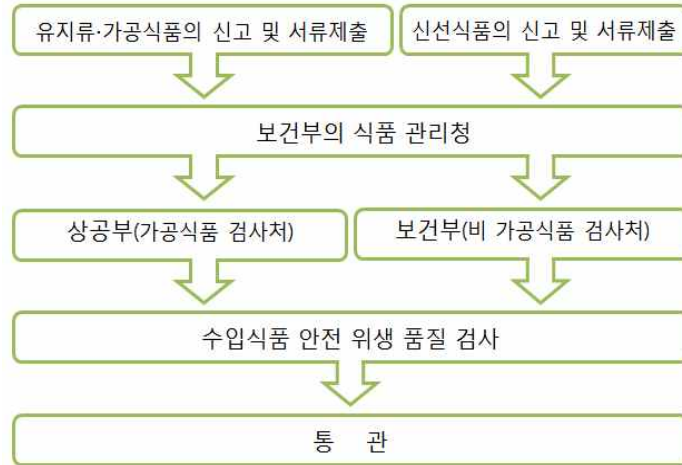
- 주요 업무 :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위생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식품관리청을 하위 조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식품관리청(Department of Food Administration)

- 소속 : 보건부
- 주요 업무 : 식품 위생과 안전을 관리, 감독함

10

품목별
수입절차



<품목 별 수입절차 요약>

수입식품은 보건부의 식품 관리청에 수입식품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베트남 도착 5일전 보건부에 검역 신고도 함께 신청한다. 보건부에서 진행되는 검역을 통과하면, 수입식품 안전위생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이 때, 품질검사는 품목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진행된다. 음료, 제과, 식품첨가물(설탕, 식초, 조미료 등), 육가공식품, 야채·과일 가공식품은 상공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가공식품 외에 기타식품은 보건부에서 품질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를 통과하면 검사인증서가 발급되며 통관이 완료된다.

✓ 가공식품 수입시 검역제도

- 필수 준비 서류
검역검사등록서
검사제 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신선 농산물 수입시 검역제도

농업농촌개발부가 발행한 39/2012/TT-BNNPTNT 시행령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신선식품은 수입하기 전에 병충해 위험성 검역 검사(Pest Risk Analysis: PRA)를 받아야 한다.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된 나무 종자, 신선 과일, 잔디 및 잔디 종자 종류, 유용한 생물 및 식물 자원에 해로운 기타 생물, 목재 및 검역 받지 않은 자른 목재

- 필수 준비 서류
수입식품 검역 신청서(부록1에 양식 첨부)
PRA 분석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한 서류를 제출(부록2)

✓ 건강 기능식품 수입시 검역제도

특수식품(의학적 치료에 사용되는 영양식품, 중환자 영양공급을 위한 식품, 필수 영양소 보조 식품 및 기능성 식품)의 경우, 준비서류에는 필수 서류 외에 연구 및 임상 실험결과 기타 자료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함